

#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 하남시장(체육진흥과)

제출일 : 2026. 3.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주경기장과 보조구장의 축구장은 동일한 규모의 인조잔디 구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, 이용자 형평성 확보를 위해 사용료 조정이 필요함
- 나. 신규 체육시설인 스크린파크골프장의 도입에 따라, 시설 이용에 대한 요금 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주경기장 축구장의 사용료 조정
  - 1) 주경기장 축구장과 보조구장 축구장은 동일한 규모의 인조잔디 구장임에도 불구하고, 주경기장 축구장의 사용료가 보조구장에 비해 약 2배로 책정되어 있음
  - 2) 보조구장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, 불가피하게 주경기장을 대관해야 하며 이로 인해 이용자는 동일한 시설 규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사용료를 부담하게 되어 형평성에 어긋남
  - 3) 주경기장과 보조구장의 사용료를 동일하게 조정할 경우, 불가피한 주경기장 대관으로 인한 이용 포기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- 나. 스크린파크골프장의 이용 요금 신설
  - 1) 현행 조례에는 신규 체육시설인 스크린파크골프장의 이용 요금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

- 2) 체육시설 이용요금은 원칙적으로 조례에 근거하여 부과되어야 하므로, 요금 규정이 불명확할 경우 요금 징수의 법적 근거가 모호해질 우려가 있음
- 3) 신규 체육시설 도입 단계부터 이용요금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요금 부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고, 요금 관련 민원 및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### **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유정수)**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경기장 축구장과 보조구장 축구장의 사용료를 동일하게 조정하고, 스크린파크골프장 이용요금을 신설하는 등 체육시설 사용료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.
- 검토 결과, 본 개정안은 체육시설 이용의 형평성과 요금 부과 기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,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